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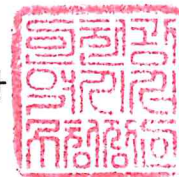
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25-213호

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

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.

2025년 11월 17일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

대상 시설물			지정 사유	안전점검·안전조치에 관한 사항	비고
시설물 명칭	소재지	관리주체			
가정보도육교	가정동 610-3	인천서구 도로과	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5조 별표 1의2 지정 대상	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, 상/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실시 *신규 지정·고시된 제3종시설물은 지정된 다음연도부터 시설물관리계획 제출 및 지정된 다음반기부터 정기안전점검 제출대상	지정